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가단2136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언,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동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67141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1,657원 및 그 중 502,914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175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624,618원 및 그 중 2,777,452원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8. 3. 20. 확정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2019. 10.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E, F, C, G 및 피고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9.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후 2019. 10.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또다른 채권자인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로하자, H 주식회사에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그리고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채권자가 통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위변제는 H 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결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층레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538.60㎡, 2층 내지 15층 각 522.37㎡, 지하 523.9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 864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1.3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86455분의 34.47 끝.